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81호
2. 발 의 자 : 심미경 의원
3. 발의일자 : 2023. 8. 14.
4. 회부일자 : 2023. 8. 21.

II. 제안이유

1. 서울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4. 학생 건강증진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2023. 8. 24. ~ 8. 28.)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심미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81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작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¹⁾’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모바일 기기와 PC를 합해 하루 평균 479.6분(약 8시간)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는 수면장애, 외부 활동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건강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악화된 상황입니다.
- 금년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²⁾’ 결과에 따르면 학생 비만 또는 과체중 비율은 30.5%로 2019년 25.8% 대비 약 18.2% 증가하였고 시력이상 비율도 증가하였습니다.

1)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785명

2)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교생 93,000여명

[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단위: %)

연도	비만(A)	과체중(B)	비만 또는 과체중(A+B)	시력이상
2019년	15.1	10.7	25.8	53.22
2022년	18.7	11.8	30.5	55.17

○ 이와 같이 학생들의 생활 방식 변화로 인해 학생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 건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학생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을 규정하여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건강증진”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³⁾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⁴⁾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⁵⁾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학생 건강 보호·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4)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교육 지원,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 구강 보건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거북목 증후군’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으로⁶⁾ 젊은 층일수록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등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거북목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⁷⁾

- 또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학생 층치 유병률은 약 18.5%에 달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1항에 거북목, 비만, 구강 보건 등 학생 건강에 있어 실제 필요한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81, 2023. 8. 22.).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팀장	정진국 02) 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 02) 2180-8269
--------	----------------------	-------	----------------------

7) 보도자료: 10대 청소년 위협하는 ‘거북목증후군’... 조기 치료 및 예방이 중요(바이오타임즈, 2023.7.6.)